

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관한 고찰 -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

유 영 일*

< 목 차 >

- I. 서론
- II.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 III.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 IV. 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
- V. 결론

I. 서론

상법 조문에는 현대 문법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장이 많다. 각 편에 따라서 용어와 문장의 불일치도 심각하다. 일반 사법인 민법의 개정 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많다. 행위능력에 관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여전히 ‘무능력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상법 제6조 등).¹⁾ 이는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60년 가까이 지나면서, 그 동안의 상법 개정이 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내용을 고치는데 급급한 것이어서, 차분하게 법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가다듬을 기회를 따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차례 상법 개정에서 일부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띄어쓰기 등 문장 정비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예컨대, 2010년 상법개정에서 공중접객업의 정의 가운데 ‘객’이나 ‘객의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교수.

1)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3.7.> 부칙 제3조에서, 민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집래'와 같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의미 전달이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쉽게 정비되었다.²⁾ 특히 2010년 어음법과 수표법 개정에서는 법제처가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조문 전체에 대한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³⁾ 그러나 상법전 전체에 대한 본격적이고 통일적인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상법 안에서 용어와 문장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다.⁴⁾

나폴레옹 민법전은 문장이 간결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일찍이 스탕달 같은 소설가는 이에 매료되어, 매일 아침 집필을 시작하기 전에 민법 조문을 몇 개 읽는 것을 습관으로 했다는 일화가 있다. 고은이나 신경숙이 집필하기 전에 우리 민법전을 들여다본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 영역이고, 법전이라고 하는 것도 전문 용어와 문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알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다면 우리도 아름다운 법전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이 난해한 법률용어와 문장에 좌절한다면 이는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2) 공중접객업의 정의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로 개정되었다(상법 제151조).
- 3)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①법률의 한글화 ②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보전→보충지, 소구→상환청구, 말미→끝부분으로 수정) ③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④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 구성 등이 이루어졌다. 김상규, “2010년 개정 어음법에 관한 소고- 한글화·어문규범을 중심으로 -”, 「법조」 제62권 12호, 2013, 267면.
- 4) 예컨대, 회사의 정관기제사항을 비교해 보면, 용어의 불일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정부도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률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고, 특히 2013년부터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등 기본법 분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최근 들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2년여 작업 끝에 2015년 10월 6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1917126)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고,⁵⁾ 나아가 알기 쉬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⁶⁾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국내 모든 법령의 정비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동안 법제처가 수행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은 사법의 기본법으로서 일반 국민의 사회생활을 직접 규제할 뿐만 아니라, 상법을 비롯한 수많은 특별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성립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법 조문을 정비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글에서는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법 가운데 특히 민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⁷⁾ 상법 제2편 상행위 부분은 민법의 법률행위에 대한 특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보다 민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III.에서는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다음, IV.에서 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에 대한 정비

5) 아쉽게도 민법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개정경과에 대해서는, 윤철홍, “알기 쉬운 민법’ 개정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 「법조」 제65권 제1호, 법조협회, 2016, 171면.

6) 시기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정비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류창호, “2013년 민법개정시안의 문장과 용어의 순화에 관한 연구”, 「법조」 제64권 제8호, 법조협회, 2015, 262면.

7)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은정, 「알기 쉬운 상법 정비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김은경,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상법총칙 상행위 보험편 연구」, 법무부, 2010; 김동훈, 「회사법상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상사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4; 맹수석, 「보험 해상법상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상사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4; 안성포,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상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상사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4; 최준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상법 해상편 연구」, 법무부, 2011; 최세련, “상법 해상편의 법률용어 및 문구오류의 개선방안”,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3 참조.

를 시도한다. 그리고 V.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상법 정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기로 한다.

II.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1. 사업목적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나감으로써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① 법률의 한글화 ②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③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④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위해 노력한다.

2. 사업실적

2005년 이전에는 법령문을 한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한글화와 용어·표현 등의 순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6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총 977건의 법률을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783건이 통과되었다. 2013년 이후에는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하여 「민법」, 「형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일본식 표현과 장애인 비하 용어가 포함된 법령 총 222건을 정비하였고, 자치법규인 조례안 59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10주년을 맞이하여 법무부와 협의하여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형법」, 「형사소송법」의 입법을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제7판)」을 공표하였다.⁸⁾

8) 아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7판)」(이하 「알법 정비기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가운데, 상법과 관련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7판)」의 주요 내용

1) 기본 원칙

(1) 쉬운 법령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 말로 정비한다.

(2) 뚜렷한 법령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들어오는 표현으로 정비한다.

(3) 반듯한 법령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킨다.

(4) 자연스러운 법령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다.

2) 용어정비

(1) 어려운 한자어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한다.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고치되,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2) 일본식 한자어⁹⁾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며, 중요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9) 일본식 한자어란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김은정, 앞의 보고서, 34면.

[일본식 한자어 정비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안
계리하다	회계처리하다, 처리하다
기타	그 밖의(에)
당해	해당, 그
~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산입하다	산입(算入)하다, 포함하다,
응하다	따르다, 응답하다, 받다, 응하다
자(者)	사람, 자

(3) 일본어투 표현

다음과 같이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일본어투 표현 정비안]

일본어 투 표현	정비안
관하여	~에 관하여 문맥에 따라 ‘관하여’ 생략 가능
대하여	에게, 로 하여금, 대하여, 는, 를
에	과, 로, 를, 보다, 에게, 에서
요하는, 필요로 하는	~이 필요한
으로써	여, 여서, 으로서
의	이, 가, 을, 를, 인, 생략하는 경우
있어, 있어서	에서, 경우, 할 때, 하여, ~는 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하지 아니하는 한	경우 외에는, 경우가 아니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 한하여	~에서만, ~에 한정하여, ~으로만, ~~에만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2회에 한하여	두 차례만, 두 번까지만, 두 차례에 한정하여, 두 번만
~에 한하다	~에 한정한다, ~로 한정한다, ~만 해당한다, ~만을 말한다, ~만(을) 할 수 있다

(4) 외래어와 외국어

외래어¹⁰⁾나 외국어는 우리말로 바꾸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어문 규정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적을 수

10)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를 말한다.

있다.

(5) 그 밖의 정비 대상 용어

① ~에게

앞말이 사물일 때에는 ‘에’를 쓰고, 사람이나 동물일 때에는 ‘에게’를 쓴다.

② 경우와 때

a. ‘~한 때’와 ‘~하는 때’는 ‘~하였을 때’, ‘~할 때’로 바꿔 쓴다.

b. ‘경우’는 ‘~한 경우’, ‘~하는 경우’와 ‘~ 할 경우’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③ 내지

‘~부터 ~까지의 규정’, ‘~부터 ~까지’, ‘~이상 ~이하’ 등으로 바꿔 쓴다. 예컨대, ‘제15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바꿔 쓴다.

④ 본딴말과 준말

a. ‘~하여’, ‘대하여’, ‘위하여’ 등은 그대로 사용한다.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하여서는’ 처럼 다른 요소와 결합하거나 다음에 ‘주다’ 등의 보조용언이 올 때에는 준말인 ‘해’로 쓴다.

b. ‘이었던’, ‘이어야’는 ‘였던’, ‘여야’로 바꿔 쓴다.

c.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현행 법령에 준말인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둔다.

d. 아니 된다, 안 된다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현행 법령에 준말인 ‘안 된다’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둔다.

e. 아니하다

‘아니하게, 아니하는, 아니한’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현행 법령에 준말인 ‘않게, 않는, 않은’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둔다.

⑤ 아라비아 숫자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은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다. 예컨대, ‘2 이상의 필지’는 ‘둘 이상의 필지’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바꾼다. 그리고 ‘수개’, ‘수개의’는

‘여러’, ‘여러 개의’로, ‘수인’은 ‘여러 명’이나 ‘여럿’으로 바꾼다.

⑥ 의한, 의하여, 의한다

a.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는 의미로 쓰였을 때에는 ‘~에 따른/따라/따른다’로 바꾼다. 예컨대, ‘제○조의 규정에 의한’은 ‘제○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바꾼다.

b. ‘의하여’가 방법이나 수단의 의미로 쓰였을 때에는 ‘~으로’ 등으로 바꾼다. 예컨대,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로 바꾼다.

⑦ 문장부호: 마침표

괄호 안에 문장이 하나일 때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둘 이상일 때에는 맨 마지막 문장에만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⑧ 틀리기 쉬운 표현

a. ‘기한 내에’, ‘기한내에’는 ‘기한까지’로 바꾼다.

b. ‘필요있는’, ‘필요 있는’은 ‘필요한’, ‘~할 필요가 있는’으로 바꾼다.

⑨ 적절하지 않은 용어

a. 권위적인 용어는 일상적인 용어로 바꾼다. 예컨대, ‘과태료에 처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꾼다.

b. 성차별적 용어, 예컨대, ‘자’는 ‘자녀’로 바꾼다.

⑩ 통일할 필요가 있는 용어

‘인’은 ‘명’으로 통일한다.

(6) 띄어 쓰기

① 띄어 쓰는 경우

a. 법령 이름과 법령문은 띄어 쓴다. 특히 법령문은 한글 맞춤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법령 이름 띄어쓰기에 따른다.

b. 항 번호(①, ②) 다음에는 한 칸 띄어 쓴다.

c. 각∨조, 각∨항, 각∨호, 각∨목 과 같이 띄어 쓴다.

d. 아니∨된다, 안∨된다, 아니하다.

② 붙여 쓰는 경우

a. ‘조 번호’와 ‘조 제목’은 붙여 쓴다. 예컨대, 제2조(정의)와 같이 쓴다.

- b. ‘조 번호, 항 번호, 호 번호, 목 번호’는 서로 붙여 쓰고, 가지번호도 붙여 쓴다. 예컨대, 제5조제2항제4호가목 제5조의3와 같이 쓴다.
- c. ‘게을리하다’는 붙여 쓴다.
- d. ‘관계있다, 관계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 관계없이, 상관없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하나의 낱말로써 실려 있으므로 붙여 쓴다.
- e. ‘지체 없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실려 있지 않으므로 띄어 쓴다.
- f. 장 제목은 법령문에서 붙여 쓴다. 예컨대 제1장 총칙과 같이 쓴다.
- g. 숫자와 단위명사는 붙여 쓴다. 예컨대, 12억3456만7500원으로 쓴다.

3) 문장정비

(1) 조나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부득이 단서를 두는 경우에는 ‘다만’으로 시작하고, 후단을 두는 경우에는 ‘이 경우’로 시작한다. 조나 항은 세 문장 이상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2) 문장 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문장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분명히 드러낸다. 조사를 잘 활용하고,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가까이 둔다. 하나의 주어에는 하나의 서술어를 쓴다.

(3) 복문에서 각각의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명확히 한다.

(4) 가능하면 능동문으로 쓴다.

일본어 투의 피동문을 사용하거나,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 피동문으로 쓰지 않는다. 다만,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에는 피동문으로 쓸 수 있다.

(5) 명확한 문장으로 쓴다.

다의적 표현은 정확한 의미로 고쳐 쓴다. 이를 위해 이중 부정문은 가능하면 긍정문으로 고쳐 쓰고, 지시어의 내용은 직접 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쓴다.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생략) ②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6) 지나친 생략은 피한다.

(7)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중복되는 표현이나 당연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표, 계산식, 그림 등을 적극 이용한다.¹¹⁾

Ⅲ.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1.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이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일반 국민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준법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은 일반사법으로서 상법 등 많은 민사특별법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제한다는 점에서, 용어와 문장이 다른 법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법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과¹²⁾ 어려운 한자어는 현대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함으로써 민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11) 예컨대, 상법 제770조(책임의 한도액)는 표나 계산식을 이용하면 조문도 간결해지고 이해도 훨씬 쉬워진다.

12) 우리 민법 조문의 약 60%가 일본 민법 조문을 직역한 것으로, 6세기 제정된 로마법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윤철홍, 앞의 논문, 169면.

것이다.¹³⁾

2. 주요내용

1) 법률의 한글화

원칙적으로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예) 추인(追認, 안 제15조 등), 소급(溯及, 안 제133조 등), 부종성(附從性, 안 제292조 등)

2) 용어 정비

(1) 일본식 한자어·표현 정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한다. (예) 假住所 → 임시주소(안 제21조), 窮迫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안 제104조), 要하지 아니 한다. → 필요하지 않다(안 제177조 등), 貸主 → 대여자(안 제599조 등), 1町步, 600坪 → 9,917.36제곱미터, 1,983.47제곱미터(안 제1008조의3)

(2) 어려운 한자어 정비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 경우 대체한다. (예) 懈怠한 → 태만한, 게을리한(안 제65조 및 제438조 등), 催告 → 촉구(안 제89조 등), 相對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안 제108조)

(3) 의미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정비한다. (예)

13) 개정안은 민법 조문 가운데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바꾸는 등 전체 조문 가운데 1,056개 조문을 정비하였다. 이를 편별로 보면, 제1편 총칙 152개, 제2편 물권 187개, 제3편 채권 392개, 제4, 5편 친족상속 325개에 달하는 등 대대적인 것이다. 아래 내용은 2015년 민법개정안 내용 가운데 상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相當한 → 적절한(안 제26조 및 제131조 등), 異議를 保留한 때에 → 이의(異議)를 단 경우에는(안 제145조 등), 公然하게 → 공공연하게(안 제197조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정비

지나치게 축약되어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는 정비한다. (예) 表意者 → 의사표시자(안 제107조 등), 復任權 → 복대리인 선임권(안 제120조 등)

(5) 양성 평등을 반영한 용어 정비

(예) 자 → 자녀(안 제781조 등), 親生子 → 친생자녀(제4편제4장제1절 제목), 양자 → 양자녀(안 제772조 등), 친양자 → 친양자녀(안 제809조 등)

(6)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는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예) 지료 → 토지 사용의 대가(이하 '지료'라 한다)(안 제286조), 要役地 → 편익을 받는 토지[이하 '요역지(要役地)'라 한다](안 제292조)

(7)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정비

잘못 사용된 용어를 바로 잡고,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킨다. (예) 人 → 자연인(안 제1편제2장 제목), 取消 → 철회(안 제7조 및 제8조), 家庭法院 → 법원(안 제9조 등), 심판 → 재판(안 제9조 등)

(8)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정비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 하여야 → 해야(안 제2조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5조 등), 아니한 → 았은(안 제9조 등)

3) 문장 정비

(1) 불명확한 표현은 명확하게 정비

현 행	개 정 안
選擇權은 相對方에게 있다(제381조제1항).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안 제381조제1항).
適當한 處分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제389조제3항).	적당한 처분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안 제389조제3항).
各 債權者 또는 各 債務者는 均等한 比率로 權利가 있고 義務를 負擔한다.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안 제408조).
債務者는 所持人의 前者에 對한 人的關係의 抗辯으로(제515조 본문)	채무자는 그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써(안 제515조 본문)
前條 本文과 같다(제536조제2항).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안 제536조제2항)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정비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꾼다.

현 행	개 정 안
含有物을 處分 또는 變更함에는(제272조)	함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안 제272조)
債務의 確定을 將來에 保留하여(제357조제1항)	채무의 확정은 장래로 미루어(안 제357조제1항)
그 增加額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제403조).	채권자가 그 증가액을 부담한다(안 제403조).
過失 없는 때에 限하여(제470조)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만(안 제470조)
權利義務에 變更을 가져오지 아니한다(제837조제6항).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안 제837조제6항).

(3) 준용 규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

준용 규정 가운데 가능한 것은 직접 풀어쓰고, 준용 규정을 다시 준용하고 있는 것은 해당 준용 내용을 직접 써 준다.

현 행	개 정 안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제12조제2항)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안 제12조제2항)
그러나 貸主가 그 瑕疵를 알고 借主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前項과 같다.(제602조제2항 단서)	다만, 대여자가 그 하자를 알면서 차용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안 제602조제2항 단서)

(4)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정비

현 행	개 정 안
不足되는(제574조)	부족한(안 제574조)

詐欺를 안 날(제823조)	사기 사실을 안 날(안 제823조)
----------------	---------------------

(5)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조문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이해하기 쉽게 ‘항’이나 ‘호’로 나눈다.

현 행	개 정 안
第128條(任意代理의 終了) 法律行爲에 依하여 授與된 代理權은 前條의 境遇外에 그 原因된 法律關係의 終了에 依하여 消滅한다. 法律關係의 終了前에 本人이 授權行爲를 撤回한 境遇에 同하다.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제127조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된다. 1.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3. 문제점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우선 법제처의 「알법 정비기준」(제7판)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예컨대, 「알법 정비기준」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아니 하면’을 민법 개정안에서는 각각 ‘그렇지 않다’(안 제580조)와 ‘않으면’(안 제545조)으로 바꾸고 있고, 또 ‘최고’를 ‘촉구’(안 제89조)로 바꾸고 있다. 그 밖에, ① 일부는 우리말로 풀어쓰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지거나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는 점(예컨대, 개정안의 ‘갖추어 두어야(제55조)’는 현행 ‘비치하여야’ 문구가 담고 있는 ‘열람가능성’의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고, ‘통상적 사용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제100조)’, ‘짜고 거짓으로 한(제108조)’ 등도 현행 조문과 의미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여럿’(제119조)과 ‘다수’(채권편 제3절)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점, ③ 앞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조항으로 끝맺을 경우에는 ‘규정’을 적지 않는다는 원칙이 일관되지 않은 점(예컨대, 제260조 제1항과 제2항, 제289조), 그리고 ④ ‘타인’과 ‘다른 사람’이 혼용되고 있는 점(예컨대, 채권편 제5장 불법행위 부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¹⁴⁾

14)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43면.

IV. 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

1. 기본원칙

법제처의 「알법 정비기준」(제7판)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법의 통일성과 체계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서 정비된 법률용어와 문장은 최대한 존중하기로 한다.¹⁵⁾

2. 용어 정비

모든 법률용어는 한글화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화하는 경우 용어가 갖는 고유한 법적 의미가 훼손되거나 언어의 경제성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경우, 그리고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는 한자어라도 그대로 사용한다.

3. 문장 정비

문장의 호응과 어순을 자연스럽게 하고,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을 준수한다. 특히 일본어식 어투나 어색한 표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표현은 자연스러운 현대 문장으로 바꾼다.

4. 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

1) 민법총칙편

(1) 대리의 방식

15) 이 점에서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작업에 상법학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민상법의 용어 정비 작업에는 민상법 학자의 공동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第115條(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한 行爲) 代理人이 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意思表示는 自己를 爲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相對方이 代理人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前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인으로서 한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민법개정안과 같이 ‘표시하지 아니하여도’를 ‘밝히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¹⁶⁾로 바꾼다. ② 「알법 정비기준」(일본어투 문장 정비)에 따라, ‘에 대하여(도)’는 ‘에게(도)’로¹⁷⁾,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바꾼다. ③ ‘그러나’는 ‘다만’으로 일괄적으로 바꾸고, ④ ‘때’는 ‘경우’로 바꾼다.

(2) 상행위 수임인의 권한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第681條(受任人의 善管義務) 受任人은 委任의 本질에 따라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委任事務를 處理하여야 한다.	제681조(수임인의 주의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49조(위임)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9조(수임인의 주의의무) 상행위의 수임인은 위임의 본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민법개정안과 같이 조문 제목을 ‘수임인의 주의의무’로, ‘위임을 받은 자’를 ‘수임인’, ‘본질’은 ‘본래 취지’로¹⁸⁾ 바꾼다. ② ‘아니한’은 민법 개정안과 같이 ‘않은’으로 바꾼다.¹⁹⁾

16) ‘표시하지 않아도’로 바꾸자는 의견: 김은경, 앞의 보고서, 158면.

17) 같은 의견: 김은정, 앞의 보고서, 40면.

18) ‘본 뜻’으로 바꾸자는 의견: 김은경, 앞의 보고서, 158·40면.

19) 「알법 정비기준」에서는 ‘아니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현대 어법에 맞게 ‘않은’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멸시효

현행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第162條(債權, 財産權의 消滅時效) ① 債權은 1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4조(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 제목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로 바꾸고, ‘인한’은 ‘인하여 발생한’으로 바꾼다. ② 「알법 정비기준」(한글화)에 따라 ‘본법’은 ‘이 법’으로, ‘단기’는 ‘짧은’으로 바꾼다. 또한 ③ 「알법 정비기준」(수동형 문장 제한)에 따라 ‘완성한다’는 ‘완성된다’로 바꾸고, ④ 「알법 정비기준」(일본어투 문장 제한)에 따라 ‘시효의’는 ‘시효’로, ‘의한다’는 ‘따른다’로 바꾼다. ⑤ ‘아니하면’은 현대 어법에 맞게 ‘않으면’으로 바꾸고, ⑥ ‘때’는 ‘경우’로, ‘그러나’는 ‘다만’으로 바꾼다.²⁰⁾

2) 물권편

(1) 상사유치권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占有한 者는 그 物件이나 有價證券에 관하여 생긴 債權이 辨濟期에 있는 경우에는 辨濟를 받을 때까지 그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留置할 權利가 있다. ② 前項의 규정은 그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

20) 5년‘간’을 5년 ‘동안’으로 바꾸자는 의견: 김은경, 앞의 보고서, 160면.

占有가 不法行爲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u>그러</u> 하지 아니한다.	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u>유치</u> 할 수 없다.
-----------------------------	-----------------------------	--	--

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한’은 ‘인하여 발생한’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유치할 수 없다’로 바꾼다.²¹⁾ ② 「알법 정비기준」(일본어투 문장 금지)에 따라 ‘그’는 삭제하고, ③ ‘그러나’는 ‘다만’으로 바꾼다.

(2) 유질계약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第339條(流質契約의 禁止) 質權設定者는 債務辨濟期 前의 契約으로 質權者에게 辨濟에 갈음하여 質物의 所有權을 取得하게 하거나 法律에 定한 方法에 依하지 아니하고 質物을 處分할 것을 約定하지 못한다.	제339조[유질계약(流質契約)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를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질물을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제 59 조 (유질 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9 조 (유질 계약의 허용)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민법 제33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알법 정비기준」(어순을 명확하게)에 따라 문장 순서를 바꾼다. ② ‘아니한다’는 ‘않는다’로 바꾸고, ③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생긴’은 ‘발생한’으로 바꾼다. ④ 「알법 정비기준」에 따라 ‘제339조의 규정’은 ‘제339조’로 바꾼다.

3) 채권편

(1) 상사계약 청약의 효력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第528條(承諾期間을 定한 契約의 請約) ① 承諾의 期間을 定한 契約의 請約은 請約者가 그 期間內에 承諾의 通知를 받지 못하면 그 效力을 잃는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①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제 51 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 51 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21) ‘그 약정에 따른다’(김은경, 앞의 보고서, 42면). ‘그러하지 않다’(김은경, 앞의 보고서, 159면).

①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아니한 때에는’은 ‘않으면’으로 바꾸고, ② ‘그’는 삭제해서 지나치게 ‘그’를 많이 사용하는 일본어투 문장을 정비한다.

(2) 낙부통지의무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第529條(承諾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契約의 請約) 承諾의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契約의 請約은 請約者가 相當한 期間內에 承諾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적절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청약에 대한 승낙여부 통지의무) 상인이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자기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승낙여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① 「알법 정비기준」(한글화)에 따라 ‘낙부’는 ‘승낙여부’로, ‘해태한’은 ‘게을리한’으로, ‘상시’는 ‘계속적인’으로²²⁾ 바꾼다. 다만, ‘지체 없이’는 「알법 정비기준」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되,²³⁾ 띄어쓰기를 한다. ②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거래관계에’는 ‘거래관계가’로, ‘그 영업부류’는 ‘자기의 영업부류’로 바꾼다. ③ 여기서 ‘자’는 법인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사람’으로 바꾸지 않는다. ④ ‘때’는 의미상 ‘경우’로 바꾼다.

(3) 소비대차 및 채당금의 이자청구권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第598條(消費貸借의 意義) 消費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金錢 其他 代替物의 所有權을 相對方에게 移轉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은 그와 같은 種類, 品質 및 數量으로 返還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제598조(소비대차의 의미) 소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채당하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대신 지급하였

22) ‘일상적인’으로 바꾸자는 의견: 김은경, 앞의 보고서, 158면.

23) 민법개정안에서도 ‘지체 없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제633조 등). 다만, 민사소송법(제28조 등)에서는 ‘바로’로 바꾸었다.

效力이 생긴다.	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였을 때에는 채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을 경우에는 채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	----------------------------------	----------------------------------

① 일본어투 문장인 지나친 ‘그’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그’는 삭제한다. ② ‘타인’은 법인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바꾸지 않는다.²⁴⁾ ③ 「알법 정비기준」(한글화)에 따라 ‘채당’은 ‘대신 지급’으로 바꾸고. ④ 항 번호 다음에는 한 칸을 띄어 쓴다.

(4) 법정이율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第379條(法定利率) 利子 있는 債權의 利率은 다른 法律의 規定이나 當事者의 約定이 없으면 年5分으로 한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로 한다.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6퍼센트로 한다.

①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채무’는 ‘채권’으로, ‘인한’은 ‘인하여 발생한’으로 바꾼다. ② ‘분’은 민법개정안과 같이 ‘퍼센트’로 바꾼다.

(5) 다수채무자 및 보증인의 연대책임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第408條(分割債權關係) 債權者나 債務者가 數人인 境遇에 特別한 意思表示가 없으면 各 債權者 또는 各 債務者는 均等한 比率로 權利가 있고 義務를 負擔한다.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 ① 여럿이 1명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24)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는 의견: 김은경, 앞의 보고서, 159·41면.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

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 제목을 ‘연대책임’으로 바꾼다. ② 민법 개정안과 같이 ‘수인’은 ‘여럿이’로²⁵⁾, ‘1인’은 ‘1명’으로 바꾼다. ③ ‘인환’은 ‘인하여 발생한’으로, ‘때’는 ‘경우’로 바꾸고, ‘그’는 삭제한다.

(6) 임치 받은 상인의 의무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第695條(無償受置人の注意義務) 報酬없이 任置를 받은 者는 任置物을 自己財産과 同一한 注意로 保管하 어야 한다.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써 보관해야 한다.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주의의무) 상인이 자기의 영업 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해야 한다.

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민법개정안과 같이 조문 제목을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에서 ‘임치를 받은 상인의 주의의무’로 바꾼다. ② 민법개정안과 표현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의로써 보관해야 한다.’로 바꾸고, ③ ‘아니하는’은 ‘않는’으로, ‘때’는 ‘경우’로 바꾼다.

(7) 상사매매

가.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 경매권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第487條(辨濟供託의要件, 效果) 債權者가 辨濟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辨濟者는 債權者를 爲하여 辨濟의 目的物을 供託하여 그 債務를 免할 수 있다 辨濟者가 過失없이 債權者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대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過失)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건을 공탁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25) ‘여러 사람’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김은경, 앞의 보고서, 159·41면), 법인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법개정안과 같이 여럿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p>를 알 수 없는 境遇에도 같다. <u>第490條(自助賣却金の供託) 辨濟의 目的物이 供託에 適當하지 아니하거나 滅失 또는 毀損될 念慮가 있거나 供託에 過多한 費用을 要하는 境遇에는 辨濟者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그 物件을 競賣하거나 市價로 放賣하여 代金を 供託할 수 있다.</u></p>	<p>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u>제490조(매각대금의 공탁) 변제의 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市價)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u> 1. 공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탁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경우</p>	<p>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p>	<p>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에게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대금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p>
--	---	--	--

① 「알법 정비기준」(일본어투 문장 제한)에 따라 지나친 ‘의’와 ‘그’의 사용을 제한하고, ‘에 대하여’는 ‘에게’로, ‘에 있어서’는 ‘에서’ 바꾼다. ②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항’은 ‘제1항’으로, ‘전2항’은 ‘제1항과 제2항’으로 바꾼다.²⁶⁾ 또한 ‘그 대금’과 ‘그’를 ‘경매대금’으로 풀어 쓴다. ③ ‘최고’는 그대로 유지한다.²⁷⁾ ④ 「알법 정비기준」에 따라 ‘상당한’은 ‘적절한’으로 바꾸고, ⑤ ‘때’는 ‘경우’로, ‘그러나’는 ‘다만’으로 바꾼다.

나.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p><u>第580條(賣渡人の 瑕疵擔保責任) ① 賣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第575條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 買受人이 瑕疵있는 것을 알았거나 過失로 因하여</u></p>	<p>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대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대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過</p>	<p>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p>	<p>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대상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한 경</p>

26) 같은 의견: 김은경, 앞의 보고서, 160·44면.

27) 같은 의견: 김은경, 앞의 보고서, 160면. 민법개정안에서는 ‘촉구’로 바꾸고 있다.

<p>이를 알지못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失)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p>	<p>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강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강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개월 내에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②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p>
--------------------------------	--------------------------------	---	---

① 조문 제목에서 ‘의’를 삭제한다. ② ‘아니하면’은 ‘않으면’으로, ‘아니 한다’는 ‘않는다’로, ‘또는’은 ‘나’나 ‘이나’로, 그리고 ‘에 있어서’는 ‘에서’로 바꾼다. ③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바꾼다. ④ ‘수령’은 ‘반은’으로 바꾸고,²⁸⁾ ⑤ ‘6월’은 의미상 ‘6개월’로 바꾼다. ⑥ 제2항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어순을 변경한다. ⑦ ‘하자’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정착된 법률용어이므로 바꾸지 않는다.²⁹⁾ ⑧ 민법개정안과 같이 ‘목적물’은 ‘대상물’로 바꾼다.

다. 확정기매매

현행 민법	알기 쉬운 민법	현행 상법	알기 쉬운 상법
<p>第545條(定期行爲와解除) 契約의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依하여 一定한 時日 또는 一定한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하면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境遇에 當事者 一方이 그 時期에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對方은 前條의 催告를 하지 아니하고 契約를 解除할</p>	<p>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이 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한쪽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제544조의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p>	<p>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p>	<p>제68조(확정기매매와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한쪽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이</p>

28) 같은 의견: 김은정, 앞의 보고서, 46면.

29) ‘흠’으로 바꾸자는 의견: 김은정, 앞의 보고서, 161면.

수 있다.	있다.	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	--------------------------------------	-----------------------------

① 조문 제목을 민법에서와 같이 ‘확정기때매와 해지’로 바꾼다. ② 「알법 정비기준」(일본어투 문장 제한)에 따라 ‘에 있어서’는 ‘에서’로 바꾸고, ‘그’는 삭제한다. ③ 「알법 정비기준」(한글화)에 따라 ‘일방’은 ‘한쪽’으로 바꾼다, ④ 문장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상대방은’을 ‘상대방이’로 바꾸고, ‘아니하면’은 ‘않으면’으로 바꾼다.³⁰⁾ ⑤ 민법개정안에서는 ‘시일’로 되어 있고 상법에서는 ‘일시’로 되어 있는데, 자연스러운 표현인 상법의 ‘일시’를 그대로 유지한다.

V. 결론 - 상법 정비를 위한 제언

일반 국민이 법령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도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뛰어나고, 또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법령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알기 쉬운 상법」정비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비방법에 관한 입장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과 같이 상법 전체 조문을 일괄 정비할 것인지, 아니면 상법 각 편에 대한 개정 시마다 관련되는 부분만 순차적으로 부분 정비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법의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전체 조문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비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상법 교수와 법조 실무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상법 조문 전체에서 정비가 필요한 용어와 문장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민상법 학자의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민상법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가능한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 IV.에서 보듯이 민법의 특칙을 규정한 상법 제2편에서 조차, 민상법 간에 용어와 문장의 불일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민상

30) 같은 의견: 김은정, 앞의 보고서, 45면.

법 조항을 일치시키는 일도 어디까지나, 법제처의 「알법 정비기준」에 합치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셋째, 상법을 해체하여 각 편을 단행법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정비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법이 지나치게 방대한 내용을, 그것도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부분을 모두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³¹⁾ 특히 상법 제3편 회사편과 제4편 보험편은 상법에서 분리해 단행법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회사편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등 특별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보험편도 독일과 미국, 영국 등의 예에 비추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²⁾ 상법전이 분리되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

투고일 : 2017.11.30 / 심사완료일 : 2017.12.13 / 게재확정일 : 2017.12.18

31) 일본 我妻榮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법은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게 마치 장난감처럼 들어 있다.”고 한다. 我妻 榮著/조제석 역, 「민법안내-사법의 길잡이」, 육법사, 1991, 71면.

32) 최준선, 「상법의 편별 개별입법화 방안 비교법제 연구」, 법무부, 2009, 521면.

[참고문헌]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7판)」, 2015.
- 김상규, “2010년 개정 어음법에 관한 소고- 한글화 · 어문규범을 중심으로 -”, 「법조」 제62권 12호, 법조협회, 2013.
- 류창호, “2013년 민법개정시안의 문장과 용어의 순화에 관한 연구”, 「법조」 제64권 8호, 법조협회, 2015.
- 박동진,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민사법학」 제42권, 한국민사법학회, 2008.
- 윤대성, “한국 민법전의 현대어화”, 「법학논총」 제17집 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윤철홍, “‘알기 쉬운 민법’ 개정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 「법조」 제65권 1호, 법조협회, 2016.
- 최세련, “상법 해상편의 법률용어 및 문구 오류의 개선방안”,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1호, 한국해법학회, 2013.
- 강현철,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 김동훈, 「회사법상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상사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4.
- 김은경,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상법총칙 · 상행위 · 보험편 연구」, 법무부, 2010.
- 김은정, 「알기 쉬운 상법 정비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 류창호, 「민법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 맹수석, 「보험 해상법상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상사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4.
- 안성포,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상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상사법분야의 법률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4.
- 최준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상법 해상편 연구」, 법무부, 2011.
- _____, 「상법의 편별 개별입법화 방안 비교법제 연구」, 법무부, 2009.

[국문초록]

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관한 고찰 -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

유 영 일*

상법 조문에는 현대 문법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장이 많다. 각 편에 따라서 용어와 문장의 불일치도 심각하다. 이는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60년 가까이 지나면서, 그 동안의 상법 개정이 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내용을 고치는데 급급한 것이어서, 차분하게 법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가다듬을 기회를 따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차례 상법 개정에서 일부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띄어쓰기 등 문장 정비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상법 전체에 대한 본격적이고 통일적인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상법 안에서 용어와 문장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이 난해한 법률용어와 문장에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이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도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률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고, 특히 2013년부터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등 기본법 분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마침내 최근 들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2년여 작업 끝에 2015년 10월 6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국내 모든 법령의 정비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동안 법제처가 수행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은 사법의 기본법으로서 일반 국민의 사회생활을 직접 규제할 뿐만 아니라, 상법을 비롯한 수많은 특별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성립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법 조문을 정비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교수.

에 이 글에서는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법 가운데 특히 민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상법 제2편 상행위 부분은 민법의 법률행위에 대한 특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보다 민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III.에서는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다음, IV.에서 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를 시도한다. V.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상법 정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기로 한다.

앞으로 「알기 쉬운 상법」정비 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 전체에 대한 일괄 정비가 바람직하다. 둘째, 민상법 학자의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상법을 해체하여 회사법과 보험법을 단행법화 하여야 한다. 상법전이 분리되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상법 제2편, 상행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알기 쉬운 민법」, 「알기 쉬운 상법」, 법률용어와 문장 정비

[Abstract]

A Study on the Purification of Legal Terms and Sentences in
Commercial Act Part II (Commercial Activities)

- with regard to '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in 2015 -

You, Young-Ihl*

There are many terms and sentences which are not grammatically correct among articles of Commercial Act. Discordances of terms and sentences in each Part are also significan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we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purify the legal terms and sentences cooly. It was very urgent for us to introduce new systems and modify the old contents since the enactment of Commercial Act in 1962. In the past, some amendments of Commercial Act, changing legal terms from Chinese to Korean partially and purification of sentences including word spacing were achieved. However, there were no full-scale and unifying purification works of Commercial Act. Rather, this has resulted in discordance of terms and sentences among Commercial Act. In a legalism society, people who are governed by the law should not be frustrated with the difficult legal terms and sentences. So, we have to do our utmost effort to make Act easy to read and understand immediately.

Korean government has made many efforts to purify the legal terms and sentences for a long tim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as carried out 'Easy to-know Act Enactment' Project since 2006, and especially since 2013, has expanded her business scale into the basic Acts including Civil Act which are very closely related to people's daily life. Finally, in October of 2015, '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2 years' hard work. This 2015 Amendment could be called as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 in the past 'Easy to-know Act Enactment'

*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Ulsan.

Project, in the aspect of suggesting standards for the purification of all the domestic Acts. That is because Civil Act, as a basic law, not only governs the people's daily life, but also influences numerous special Acts including Commercial Act. At this point, when 「Easy-to-know Civil Act」 is anticipated to be introduced in the very near future, it becomes very urgent task for us to purify the legal terms and sentences in Commercial Act.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purification of legal terms and sentences especially in Commercial Act Part II. which has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2015「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Because Part II. of Commercial Act, (namely, Commercial Activities) consists of special provisions to the Legal Activities of Civil Act, it is directly influenced by the 2015 「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Key words : Commercial Act Part II, Commercial Activitie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asy to-know Act Enactment」 Project, 「Easy-to-know Civil Act」, 「Easy-to-Know Commercial Act」, Purification of Legal Terms and Sentences